

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오장세의원 외 5인

나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

○ 회부일자 :

다. 상정일자 : 제223회 임시회

○ 2004. 2. 17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 : 오장세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(제7060호)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7061호)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우리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시키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: ██████████
- 존 속 기 간 : 의결일로부터 효력 종료 시까지
- 위 원 선 임 :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

3. 검토보고요지

(의회운영전문위원 김승진)

-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을 검토한 바
- 본 결의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된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한 우리도의 방향정립과 논리를 개발 반영시키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사안으로
- 집행부에서 별도의 도정책신기획단을 구성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리도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제안이라고 사료됩니다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 의결

7. 기 타 의 견 : 본위원회의 활동을 희망하는 의원들을 위원으로
선임하고 특별위원회 운영은 신행정수도충청권
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운영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“없음”

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 번호	17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4년 2월 14일

발 의 자 : 오장세위원외 5인

제안이유

- 2004년 1월 16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(제7060호)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(제7061호)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법의 바람직한 방향 정립과 우리도의 논리를 개발하여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지방분권 세부계획 수립시 반영시키기 위함

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 : 8명 정도
- 존속기간 : 의결일로부터 효력 종료시까지
- 위원선임 :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

관련법규

- 지방분권특별법
- 국가균형발전특별법
-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

□ 관련법 주요내용

【지방분권특별법】

-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책임하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함으로서 내실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지방분권의 기본이념으로 함(동법 제3조)
-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·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, 시·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,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(동법 제6조)
-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,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(동법 제10조 제항)
-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(동법 제 10조 제2항)

-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(동법 제10조 제3항)
-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, 국고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(동법 제11조)
-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, 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함(동법 제12조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,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동법 제13조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제도, 주민소환제도,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함(동법 제14조)
- 지방분권추진과제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위원회를

두도록 하고, 동위원회로 하여금 지방분권 실천계획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(동법 제17조 및 제21조 제1항)

-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함(동법 부칙 제2항)

【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】

-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 계획을,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·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함(동법 제4조 및 제6조)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, 산·학·연 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,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(동법 제10조 및 제11조)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,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,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,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,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, 고용 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함(동법 제11조 내지 제16조)
-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,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동법 제18조)
-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(동법 제21조)
-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,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(동법 제22조)
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, 기획단 사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,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함(동법 제26조 및 제27조)
- 특별시·광역시·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,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함(동법 제28조)
-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며,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·운영하도록 함(동법 제30조 내지 제32조)
-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80, 과밀부담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,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등의 관련사업에 대한 보조 등을 그 세출로 하며, 지역혁신 사업계정은 주세의 100분의 20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,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에 대한 출연·보조 또는 융자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함(동법 제34조 및 제35조)

-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도록 함(동법 제38조)

-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,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,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들 수 있도록 함(동법 제39조)